1. 학칙 일부 개정에 따른 신 · 구조문 대조표

근거	1.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2020.1.14.일부개정)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4조(학칙의 기재사항 및 대상)	제4조(학칙의 기재사항 및 대상) 본교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칙 2.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교과.수업일수. 평가 및 과정수료.졸업의 인정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6.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7.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8.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9. 학생포상 및 징계,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10.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1. 학교 시정 12. 학칙 개정 절차 13.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14.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학칙의 기재사항 및 대상) 본교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칙 2.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교과.수업일수. 평가 및 과정수료.졸업의 인정 5.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6.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7.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8.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9. 학생포상 및 징계 10.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1. 체험학습 12. 학칙 개정 절차 13. 장애학생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14.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15.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16. 교권보호	
제7조(휴업일) ①항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①항에 따른 용어 통일
제9조 (학생정원)	제9조(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인원수는 24명 이하로 한다.(단,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 정원에 한하여 시행)	.제9조(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인원수는 20명으로 한다.(단,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 정원에 한하여 시행하며, 21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은 학급당 20명 미만인 경우 전입생을 받는다.)	✓학습권 관련조항 최소인원으로 변경
제10조 (교육과정)	제10조(교육과정) 본교의 본교의 교육과정 및 시간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교육과정) 본교의 교육과정 및 시간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교과 및 교육과정 관련 조항 추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학교는 교육과정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을 운영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교육과정 등) ①항)
제11조 (수업일수)	제12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으로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수업일수를 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④ 의무교육대상자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①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으로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수업일수를 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①항에 따른 용어 수정 및 ③항내용 추가 ✓③,④항은 수업일수와 관련성이 없어 삭제
제12조 (평가)	제12조(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되 평가 시기 및 방법은 학교장이 별도의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제12조(평가) ① 평가는 본교 교육과정 평가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학생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부설초 학생평가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칙 제34조에 따른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생평가 관련 계획 및 세부 사항은 학생평가관리규정 및 매학년도 교육과정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평가 관련 내용은 변경하고, 정보통신 매체 이용 수용 평가에 내용을 추가함.
제 13조(수업운영)	신설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에 따라 내용 신설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칙 제40조에 따른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제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수료	✓학적처리 용어에 따른 수정
제19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①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학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명 이상을 포함하며, 외부위원에는 학교 소재 지역의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 1명, 학부모 중 1명 이상을 포함한다.** **④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 2(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에 따라 신설
제26조 (교과목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 평가)	제26조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 평가 소위원회)	제26조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5 관련 명칭 변경
제29조 (학생인권보장)	신설	제29조(학생인권보장)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관련 조항 신설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30조 (학생포상)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이 우수한 어린이, 공로가 있는 어린이, 바른 인성을 실천하는 어린이 등에 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공로가 있는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교육활동 각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 또는 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상 규정**을 정한다.	✓학생 관련 포상은 '시상 규정'으로 정함.
제31조 (징계)	~~① 학교의 장은 학생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교의 생활규정에 따라 시행한다.(개정2012.7.16.)~~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학생징계가 필요 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등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학생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개정 2012.7.16.)~~ ~~③ 장애학생에 대해 폭력이 가해졌을 때에는 가해학생에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처벌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한다.(신설2012.2.10.)~~ ~~④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해 학생징계가 필요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신설2011.6.15.)(개정2012.7.16.)~~ ~~⑤ 본교 생활규정 제44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임의로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 외 교육적인 방법으로 지도한다.(신설2017.7.11.)~~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단계-훈계(구두 주의) 2. 2단계-개별 상담 3. 3단계-학부모 상담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나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벌, 언어폭력 등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라 내용 명시
제32조(학교 내 교육활동 질서 유지)	~~제32조(학교 내 교육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신설2017.7.17.) ① 본교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교복, 명찰 등을 착용 패용하여야 한다.~~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생생활 규정'으로 내용으로 삭제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② 학생은 음란물, 흡연 관련물, 흉기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으며, 담임교사는 안정된 교육활동을 위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제11장 체험학습	신설	제11장 체험학습	
제34조(교외체험학습)		제11장 체험학습의 제34조로 변경	
제13장 장애학생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신설	**제13장 장애학생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제33조(차별 금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학생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①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입학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등 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③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④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⑤ 입학·전학 등의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제34조(인권 보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인권침해 사건 시스템의 구축,운영)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①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을 연 2회, 교직원 대상 연 1회 실시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 금지)에 따라 제41조(차별 금지) 조항 신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13조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따라 제42조(인권 보장) 조항 신설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③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제16장 교권 보호	**신설**	제43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4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45조(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

2.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신 · 구조문 대조표

근거	1.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2.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협조(학교자치과-26345(2020.12.14.))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2020.1.14.일부개정))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조 (목적)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용어 수정]** 학생생활지도->학생생활교육 **(학생인권 강화)**
제2장 생활지도 협의회	제2장 생활지도 협의회	**제2장 생활교육 협의회**	**[용어 수정]** 생활지도협의회->생활교육협의회
제9조 (기본품행)	제9조 (기본품행)	제9조 **(생활교육)**	**[용어 수정]** 기본품행->생활교육
제10조 (자학자습)	제10조 (자학자습)	제10조 **(자기주도적학습)**	**[용어 수정]** 자학자습->자기주도적 학습
제13조 (교우관계)	제13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①모든 학생은 타인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②모두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한다. ③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내용 추가]** 학생 상호 관계의 기본 예의 규정
제14조 (폭력예방)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2. 경찰청 범죄신고 112 3.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4. 교육청 또는 우리 학교 생활지도 전담기구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호자** **2. 학교폭력 전담기구** **3.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4. 학교폭력전담 경찰관 및 112** **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도우미 1388**	**[순서 변경]** 학생기준 가깝고 쉬운 순서로 변경
제23조 (상고)	제23조 (상고) 상고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제23조 **①(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② 토요휴업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어 수정]** 표로 내용 정리, 일수 계산을 위한 설명글 추가.
제28조 (교외생활)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동료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용어 수정]** 상급학생, 본분 용어 사용하지 않음.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의무를**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30조 (사이버 생활)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② **SNS등 사이버상에서 폭력, 성희롱, 강요,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용어 수정]** 사이버폭력 예방 문구 수정
제31조 (통신기기 관리)	① 휴대전화기의 사용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은 교내에서 일과시간 중에는 휴대폰의 전원을 켜거나 통화할 수 없다.	① 휴대전화기의 사용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은 일과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와의 협의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내용 수정]** 학생 인권 및 휴대전화 사용 가능 규정
제4절 학생회	**제4절 학생회**	**제4절 학생자치회**	**[용어 수정]** 학생자치 강화
제32조 (회원)	**제32조 (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32조 (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내용 수정]** 학생자치회 회원 확대
제34조 (금지활동)	**제34조 (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삭제]**	**[삭제]**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회의. 금지활동 삭제
제35조 (관장사항)	**제35조 (관장사항)**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 연구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5조 (활동사항) 학생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① 학생 연구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생자치회의 활동은 학생자치회 자체 계획에 따른다.**	**[내용수정]** 관장→활동, 재난지원→자체계획
제4장 학생 생활지도	**제4장 학생 생활지도**	**제4장 학생 생활교육**	**[용어 수정]** 생활지도->생활교육
제1절 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1절 생활교육**	**[용어 수정]** 생활지도->생활교육
제41조 (안전지도)	제41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③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④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제41조 (안전**교육**)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③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④ 등·하교 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용어 수정]** 안전지도->안전교육
제42조 (진로지도)	**제42조 (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④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42조 (진로교육)** 진로**교육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교육**에 활용한다.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③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④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용어 수정]** 진로지도->진로교육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43조 (교외생활지도)	**제43조 (교외 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3조 (교외 생활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 학생들의 생활을 교육한다.**	**[용어 수정]** 생활지도->생활교육
제44조 (학생의 징계)	**제44조 (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항에 따라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① 학교내의 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각 호에 따라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 1. 수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교사의 경고 및 훈육에 응하지 않는 행동 및 경미한 교권침해 언행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훈육, 지도한다. 2. 1에 해당하는 행동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할 경우, 학부모를 소환하여 상담을 통한 교정활동을 실시한다. 3. 2에 해당하는 행동을 2회 이상 보이고 개선이 어렵다 판단될 때에는 정규 수업에서 격리하여 특별교육 이수과정을 거쳐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4.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학생의 징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시행된다.) ② 장애학생에 대해 폭력이 가해졌을 때에는 가해학생에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처벌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한다 ③ 학생으로부터의 교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경미한 교권침해 사안은 경미한 비교육적 언어, 놀림, 비난 등으로 ①항의 학교내의 봉사 및 특별활동 이수의 각 1호,2호에 따른다. 2.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은 폭행,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특별교육 과정은 징계 수준 및 학생의 반성 정도를 파악하여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실행하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권고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각 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급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다툼은 학급 자치 법정을 구성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44조 (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단계-훈계(구두 주의)** **2. 2단계-개별 상담** **3. 3단계-학부모 상담**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나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벌, 언어폭력 등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용 수정]** 학생징계에 대한 법적 규정 명시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45조 (보호자의 책임)	제45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45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적·도의적 책임을 진다.**	**[내용 수정]** 학생 보호자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 명시
제52조 (구성)	제52조(구성) ①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은 위원은 7인 위원(교감, 보건교사, 생활부장, 전문상담교사, 학부모)으로 구성하고 학부모 위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2조(구성) ①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은 위원은 7인 위원(교감, 보건교사, 생활부장, 전문상담교사, 학부모)으로 구성하고 학부모 위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내용 수정]** 규정에 맞추어 전담기구 구성 내용수정